

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7. 3. 7
- 다. 상정일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이병일
- 나. 제안사유
 - 특허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- 다. 주요내용
 - 제13조 제2항 “한것인 경우에는” → “한 경우에”로
 - 제13조 제2항 “가지는” → “갖는”으로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특허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생략

5. 토론요지

생략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 - 32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특허법개정 ('90. 1. 13)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"법 제17조 및 제18조"를 → "법 제39조 및 제40조"로 개정 (안 제1조)
- "한것인 경우에는"을 → "한 경우에"로 개정 (안 제13조 제2항)
- "가지는"을 → "갖는"으로 개정 (안 제13조 제2항)

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"를 "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"로 한다.

제13조 제2항중 "한것인 경우에는"을 "한 경우에"로 하고 동조동항중 "가지는"을 "갖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